

# 고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311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6. 7. 10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7. 10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: 2026. 7. 29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녹지공원과장 김주화)

#### 가. 개정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령의 위원회 명칭 반영(안 제명, 제1조 및 제2조)
- 2) 신설된 상위법의 제명 반영(안 제1조 및 제6조)

#### 다. 참고사항

##### 1) 관계법령

가) 「산림재난방지법」 제23조

나) 「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」 제14조

##### 2) 예산조치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##### 3)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17700(2026. 4. 20.)호]

4) 기 타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 공고 제2026-902호

- 예고기간: 2026. 4. 21.~2026. 5. 11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마)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산림보호법」에서 분리·제정된 「산림재난방지법」의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 명칭 및 인용 법령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
- 이는 상위법령의 제정 취지를 반영하여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,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조례 운영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6. 7. 2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